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57,061,782	25,711,853
일반회계	722,486,854	21,674,606
특별회계	134,574,928	4,037,248
공기업특별회계	49,773,743	1,493,21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9,773,743	1,493,212
기타특별회계	84,801,185	2,544,03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29,322	450,880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2,830,821	84,925
수질개선특별회계	40,000	1,200
도시개발특별회계	28,459,000	853,7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17,964	126,539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4,052,930	121,5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212,000	6,360
주택사업특별회계	14,481,676	434,450
농공단지특별회계	7,966,472	238,994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223,639	36,709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513,082	105,39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55,000	1,6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19,279	81,57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50,13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